



I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Ltd. / (주) IC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914 호

Tel : 02-6351-9001

Fax : 02-6351-9007

홈페이지 : www.icrqa.com

Doc. No / 발행번호 : ICR S-15-12-24-1

Date / 발행일자 : 2015 년 12 월 24 일

To / 수 신 : ICR 심사원

Attn.NO / 참 조 : ICR 내부직원

Subject / 제 목 : 부실인증 신고센터 및 인증서 내용 개정에 관한 件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2일 한국인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인증기관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3. 간담회에서 보고제도 및 부실인증 신고센터 운영관련 설명회도 함께 진행 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 심사원께 알려드립니다.

4. 먼저, 부실인증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

제39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한 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한 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현재까지 부실인증으로 인한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11, 3	KAB 인증기관 정지 (1건)
2012, 3	ANAB 인증기관 정지 (1건)
2012, 4	해외인정기관 통보 (4건)
2013, 10	KAB 인정정지 (1건)
2013, 11	KAB 인정정지 (2건)
2014, 10	해외인정기관 통보 (6건)
2014, 11	벌금부과 7건
2015, 12	해외인정기관통보 (5건)

6. 특히 2015년 발생한 품공법 및 환친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 졌습니다.

- 다 음 -

형사처분(고발조치)	인증기관	4개
	심사원	3명
	벌금	2천 7백 만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인증기관	7개
	과태료	4천 만원

7. 인증현황 보조제도와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7조 제 3항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8항 또는 동법 제 16조 4제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자원 고시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

8. 이에 따른 보고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보고대상	국내 소재 인증기관 본사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대리점
	국내 소재 인증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협력기관 대리점
	(국내 인증기관 협력기관의 과태료 부과 사례)

보고내용	인증기관 일반사항 및 변경사항
	인증현황 (ISO9001, ISO14001)
	ISO/TS 16949, ISO13485(ISO 9001 인증서 별도 발행) (ISO13485와 같이 나간 9001인증이 보고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례)

9. 이에 따라 한국인정지원센터는 부실인증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다 음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ISO 인증제도, 인증기관 선택, 인증절차 및 부실인증 신고 방법
- 종업원 30인 이하 기업

산업단체 및 협회에 ISO 인증관련 기사 게재

- 산업 분야별 협회 및 단체 등의 기관지에 부실인증 관련 기사 게재

10. 오는 2016년에는 인증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실행될 예정이므로 여러 심사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인증현황 보고 내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부실인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의 다각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인증기업, 인증기관, 한국인정원과 광 범위 네트워크 구축
부실인증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처분내용 공개
심사와 컨설팅(자문)분리 방안 고려

11. 아울러 2016년 1월 4일부터 발행되는 모든 ISO 9001:2008, ISO 14001:2004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018년 9월 1일로 설정이 됩니다.

12. 또한, 기존의 국문 인증서의 날짜가 영문표기법(일 월 년도 순)에서 국문표기법(년 월 일 순)으로 변경되는 점 또한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다사다난 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ICR에 보내 주신 성원과 도움에 큰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에도 신뢰와 최상의 심사서비스로 보답하는 ICR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CR 認 證 院
院 長 金 德 龍

